

의안번호	2204219
의 퇴 인	김예지의원
회 답 일	2024.10.28.
추계번호	24C3999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0조 (화장품의 기재사항)	○ 화장품의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호의 사항을 기재·표시해야 함(제1항) 1. 화장품의 명칭 2. 영업자의 상호 및 주소 3. 해당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 4. 내용물의 용량 또는 중량 5. 제조번호 6.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7. 가격 8. 기능성화장품의 경우 “기능성화장품”이라는 글자 또는 기능성화장품을 나타내는 도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도안 9.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10.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제1항의 기재사항을 시각·청각 장애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화장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는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등 총리령으로 전하는 방법 및 기준으로, 첨부문서에는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기준으로 표시하여야 함(제3항)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항에 따른 표시에 필요한 경우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제4항)	재량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10조 (화장품의 기재사항)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개정안에 따라 영업자로 하여금 화장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코드 표시의 의무를 규정하고, 필요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표시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 시 국가의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됨
 -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현재 화장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를 표시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및 사례는 없음
 - － 참고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식품 정보 장애인 접근성 개선을 위해 식품 포장지에 점자 등을 표시하는 「식품등 표시제도 관리강화」 사업 (2024년 예산, 1억 2,000만원)을 수행 중
-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개정안의 조치에 따른 중소기업의 소요 비용과 국가의 지원의 대상 범위 및 수준 등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나 가용 자료가 없어 현시점에서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음
 - － 중소기업에게 부담되는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코드 표시¹⁾에 따른 비용을 추산할 수 없고, 표시에 따른 국가의 지원 대상 범위 및 수준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현시점에서 추계가 곤란함
-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1) 대한화장품협회에 따르면, 화장품 업체의 93.5%는 생산실적 10억 미만의 중소·영세업체임. 중소 영세업체의 경우 인적, 물적 인프라가 미약하기 때문에 음성·수어변환용 코드 표시등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및 이미지 생성 등은 외부업체에 의뢰해야 하는 등 시간적·비용적 부담이 발생. 따라서 개정안의 조치는 화장품 제조사의 규모와 사업 여건을 고려하였을 때 부담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Ⅲ.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장우윤	이진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장우윤	02-6788-4741	jangwy93@assembly.go.kr